



### 보전비용(그 밖의 지원 제도)

- 교직원 및 교직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가 학교안전사고 관련 비용을 지출한 경우
- 보상범위

#### 종류

- 1 손해방지·경감비용, 긴급조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
- 2 손해배상 권리의 보전·행사 필요비용, 유익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
- 3 학교안전사고 관련 민사·형사 소송의 비용, 공탁대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

#### 대상

- 1 교직원
- 2 교직원 업무 보조자 (교육활동 참여자, 안전요원 위촉자, 사립학교 설치·경영자)

- 구비서류 1 공제급여 청구서
- 2 비용지출 관련 증명서, 비용지출 영수증
- 3 주민등록등본, 청구인 통장사본

### 위로금(그 밖의 지원 제도)

- 피공제자인 학생이 사망(원인불명)한 경우
- 보상범위 4천만원
- 구비서류 1 공제급여 청구서
- 2 사망진단서 또는 시신 검안서
- 3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청구인 통장사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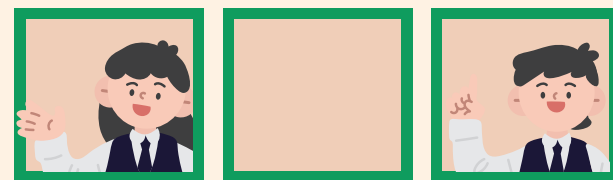
## 학교안전공제회에 자주하는 질문

- Q. 사고가 발생하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. 사고통지가 가능한가요?**
- A.** 사고통지는 지체 없이 하여야 하나 그렇지 못한 경우 소멸시효 내(3년) **지연사유서 및 보건일지 또는 초진기록지 등이 확인되면** 검토 가능합니다.
- 
- Q. 치료비 보상 범위에 대해 알려주세요.**
- A.** 건강보험을 적용 받은 급여 본인부담금이 지급되며, **비급여의 경우 일부항목이 지급세부기준에 따라** 지급됩니다.
- 
- Q. 공제급여 청구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?**
- A.**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는 **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**됩니다.
- 
- Q. 방과 후 학생들끼리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다가 다쳤는데 보상이 가능한가요?**
- A.** 교육활동 종료 후 **개별적 사유로 학교에 체류**하다가 발생한 사고는 **보상 대상에서 제외**됩니다.
- 
- Q. 학생이 화가 나서 창문을 내리쳐 손을 다쳤습니다. 보상 가능한가요?**
- A.** 고의성 및 가해성이 있는 자해행위(자살포함)는 **보상 대상에서 제외**됩니다.

- 주소** 16275) 경기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6-1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
- 대표전화** 1588-5255
- 팩스** 031-258-2127
- 홈페이지**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[www.ggssia.or.kr](http://www.ggssia.or.kr)

###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[www.schoolsafe.or.kr](http://www.schoolsafe.or.kr)

(해당 사이트에서 학교안전사고통지, 공제급여청구, 학교폭력 치료비 청구, 학부모 전자서명 등 시행)



# 공제급여 청구제도

학생 · 교직원 · 학부모 모두가 행복한 안전한 학교



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 
Gyeonggi-do School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



## 공제급여 청구 제도

학생·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가 **교육활동** 중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**학교안전사고 발생** 시 공제급여 청구 가능

### 공제급여의 종류 (학교안전법 제34조)

 요양급여 (치료비, 간병비)	 장해급여	 간병급여	 유족급여, 장례비
---	---	---	--

### 요양급여

####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치료비 지급

학교안전사고 + 피공제자 부상 또는 질병으로 치료비 발생  
=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 등에게 지급

### 보상범위

급여(건강보험 적용)	비급여 일부항목
전액 지급	일부항목 지급 (세부내역서 검토)

### 구비서류

- 필수 ① 공제급여 청구서(온라인 서명 시 생략가능)  
②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 
③ 진료비 세부내역서  
④ 주민등록등본

그 외 - 진단서(청구액 50만원 초과 시)  
- 약제비 계산서 영수증(카드전표 심사불가)  
- MRI 촬영: 의사 소견서(촬영사유 명시)  
- 보조기: 전자로 작성된 거래명세서, 의사 소견서(촬영사유 명시) 등

## 공제(요양)급여 청구 흐름도

- 

### 학교안전사고 발생
- 

### 안전사고 통지(학교장)

사고발생 시 **지체없이** 진행
- 

### 요양급여청구(학교 또는 학부모)

청구 시 구비서류 제출 방법

**온라인 청구 시 : 구비서류 파일 업로드**  
※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접속 후  
청구 진행(<https://www.schoolsafe.or.kr>)



학교안전사고보상  
지원시스템 QR코드

**오프라인 청구 시 : 구비서류 우편발송(등기)**  
※ (16275) 경기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6-1  
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
- 

### 요양급여 지급

공제회는 접수일로부터 **14일 이내** 결정  
(보완 사유 발생 시 연장 가능)
- 

### 결정내역 통지(공제회 → 학교장)

학교장은 결정통보서 청구인에게 발송  
※ 결정내역 불복(이전) 시 **90일 이내** 심사 청구 가능

### 장해급여

- 치료(요양) 종료 후 **장해가 남은 경우** 지급
- **보상범위** 일실수익(장해배상금액) + 위자료
- **구비서류** ① 공제급여 청구서  
② 장해진단서 원본  
③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명세서  
④ 요양 및 장해진단기관 의무기록지 일체 (영상자료 포함)  
⑤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
⑥ 주민등록등본, 청구인 통장사본

### 간병급여

- 치료(요양) 후 의학적 상시·수시 **간병이 필요한 경우**
- **보상범위** 상시 간병급여 간병이 실제로 행하여진  
수시 간병급여 날에 대해서 월 단위로 지급
- **구비서류** ① 공제급여 청구서  
② 간병비 발생에 따른 계산서 영수증  
③ 간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등  
④ 주민등록등본, 청구인 통장사본

### 유족급여, 장례비

- 피공제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**사망한 경우**
- **보상범위** 일실수익 + 위자료 + 장례비
- **구비서류** ① 공제급여 청구서  
② 사망진단서 또는 시신 검안서  
③ 소득금액증명서류 (월 소득액 증명 관계증명서 등)  
④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청구인 통장사본